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998

발의연월일: 2022. 8. 24.

발 의 자:고민정·김남국·김민석

김영배 • 민형배 • 서영석

오영환 • 이동주 • 전용기

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사 수행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지역사회건강 실태조사의 수행 주체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4조제1항)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제2항).

법률 제 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을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을 "제30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①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 ------시장·군수·구청장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 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 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8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지 제28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를 포함한다)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거나 구축 · 운영하고 있는 자(제30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 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략)

<u><신 설></u>

- ② (생략)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u>제2항</u>에 따라 업

<u>제30조제3항 및 제5항</u> -
,
1. ~ 3. (현행과 같음)
세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4</u>
제3항

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 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 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u>⑤</u> (생 략)

,
<u>5</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